|  |  |
| --- | --- |
| 1. **운용사명** |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|
| 1. **펀드명** | 한앤컴퍼니 제4의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|
| 1. **투자구조도** |  |
| 1. **처분이익**   **배분구조** | **PEF 처분이익 배분구조** (근거: 정관 제4.3조) 각 유한책임사원의 배분 당시의 총 출자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유한책임사원에게 100%를 배분각 유한책임사원의 배분 당시까지의 미지급 우선배분금액(연 복리 8%)이 0이 될 때까지,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100%를 배분(단, 임시투자 관련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음)성과보수로서, 위 제(2)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지급된 금액 및 본 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의 20%에 달할 때까지 업무집행사원에게 100%를 배분성과보수로서 업무집행사원에게 20%, 유한책임사원에게 나머지 80%의 비율로 전액을 배분**SPC 처분이익 배분구조** (근거: 한앤코메드테크홀딩스제1호 정관 제29조 제2항 및 제4항, 한앤코실리콘홀딩스 정관 제29조 제1항 및 제3항)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원에게 분배하며, 분배의 시기, 기준일, 방법, 금액 및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원총회에서 정함 |
| **4-1. 차등**  **정산분배 조항**  **존재하는 경우** | 해당사항 없음 |

|  |  |
| --- | --- |
| 1. **운용사명** | 한앤컴퍼니 유한책임회사 |
| 1. **펀드명** | 한앤컴퍼니 제4의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|
| 1. **투자구조도** |  |
| 1. **처분이익**   **배분구조** | **PEF 처분이익 배분구조** (근거: 정관 제4.3조) 각 유한책임사원의 배분 당시의 해당 투자목적 출자금 혹은 임시투자 목적 출자금액에 달할 때까지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100%를 배분함.각 유한책임사원의 배분 당시까지의 비용목적 출자금 전액 상당액을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각 유한책임사원의 배분 당시까지의 미지급 우선배분금액(연 복리 8%)이 0이 될 때까지,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100%를 배분(단, 임시투자 관련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음)성과보수로서, 위 제(3)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지급된 금액 및 본 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의 15%에 달할 때까지 업무집행사원에게 100%를 배분성과보수로서 업무집행사원에게 15%, 유한책임사원에게 나머지 85%의 비율로 전액을 배분**SPC 처분이익 배분구조** (근거: 한앤코메드테크홀딩스제1호 정관 제29조 제2항 및 제4항)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원에게 분배하며, 분배의 시기, 기준일, 방법, 금액 및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원총회에서 정함 |
| **4-1. 차등**  **정산분배 조항**  **존재하는 경우** | 해당사항 없음 |